

# 명곡안연구소 규정(4-2-5)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 및 소재지) 이 연구소는 건양대학교 부설 명곡안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연구소는 안질환에 관련된 학술적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하여 안과학(眼科學) 분야의 학술 진흥 및 국가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함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안과학 임상실험 및 사례연구
2. 안과학 기초학문 연구
3. 안과학 논문집 및 연구지 발간
4. 안과학 관련 전문서적 발간 및 번역서적 출판
5. 안과학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
6. 안과학 강연 개최
7. 국내외 학술교류
8. 실험동물실 운영, 관리에 관한 사업
9. 안질환 치료 사이버 상담실 운영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
10. 기타 연구소의 설립 취지에 합당한 사업

## 제2장 조직 및 임원

제4조(조직) 연구소는 각막연구부, 녹내장연구부, 망막연구부, 실험동물실 등 3부 1실의 부서를 둔다.

제5조(임원 및 임기) ① 연구소에 소장 1인, 총무 및 각 부에는 부장 1인을, 실에는 실장 1인을 둔다.

②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, 또는 안과전문의 중에서 추천받아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직무는 연구소를 대표하고,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총무는 연구소 사업의 기획 및 재정관리 업무 연구행정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.

④ 각 부장 및 실장은 소장이 임명하며, 각 부 및 실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.

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## 제3장 연구원

- 제6조(연구원) ① 연구소에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연구원, 위촉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연구원은 본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또는 전문의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.
- ③ 연구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위촉연구원은 전문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되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④ 보조연구원은 연구소의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원의 추천으로 소장이 임명한다.

## 제4장 운영위원회

- 제7조(구성 및 회의)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전문의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 제5장 재 정

제9조(재정) 연구소의 재정은 산업체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비, 사업수익금, 기타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(회계년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